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 후 다시 그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사용중지 또는 사용재개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신속히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대행제도를 도입하며, 법 제38조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법 제33조에 따른 양벌규정임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법 제34조에 따른 양벌규정인 법 제38조제2항의 벌금액보다 적거나 같게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 간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신고기한 현실화(안 제11조의2제2항)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

나.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제도 도입(안 제18조제2항 등)

건축·전기·화공 등 분야별 전문 역량을 소지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 결격사유 및 성실의무 등을 정한다. 양벌규정의 벌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현행 양벌규정의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중지하거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로,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을 “재개하려는 날의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신고”를 “따른 사용 중지신고”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 등)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항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는 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위험물시설 점검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5항 중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를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그”로, “그 업무”를 “업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을 “(탱크시험자 등에 대한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을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해당 업무

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감독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자로서 대통령령이”를 “자(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취소

제31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7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

7의3.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4조의2 중 “제조소등을”을 “위험물시설을”로 한다.

제3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으로,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3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점검업무를 한 자

제36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탱크시험자”를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한다.

9의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의3.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제38조제1항 본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28조, 제34조의2,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행일 속
한 연도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생 략)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u>중지하거나</u>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u>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u>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u>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 재개하려는 날의 3일 -</u> ----- ----- ----- -----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u>따라</u>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 <u>따른 사용 중지신고</u>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6조의2(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 등) ① 제조소등의 위</u>

치·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항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위험물시설 점검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또는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그 -
----- 업무-----

----- 해당 -----

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
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
· 탱크시험자 ·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탱크시험자 등에 대한 명
령) -----
----- 탱크시험자 또는 위
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해당 업
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감
독상 -----
-----.

제28조(안전교육) ① -----

자(안전관리자 ·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
-----.

② ----- 제1항-

-----.

③ 제1항-----

-----.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④ -----
----- 제1항-----

-----.

제29조(청문) -----

-----.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취소

제31조(수수료 등)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

7의3.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8. <u>제18조제3항</u>에 따른 정기검 사 9. · 10. (생략)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u>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u>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제조소등을</u>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삭제	<u>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u> 8. <u>제18조제4항</u>----- -- 9. · 10.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u>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u>-----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u> 3.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벌칙) ----- ----- ----- <u>위험물시설</u> 을 ----- ----- --. 제35조(벌칙) ----- ----- ----- -----.
---	--

3. (생략)

<신설>

4.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
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
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
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제5호·제6호,
제36조제6호·제7호·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
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
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은 자

6. ~ 9. (생략)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점검업무
를 한 자

4.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 제6조제1항
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

----- 제7조제2항-----

5. 제18조제4항-----

6. ~ 9.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

-----.

1. ~ 9. (생략)

<신설>

<신설>

10. ~ 12. (생략)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
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 15. (생략)

제3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
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의3.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
여 정기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
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 12. (현행과 같음)

13. ----- 탱크
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
업자-----

14. ·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양벌규정) ① -----

----- 1억원 -----

----- 3억원 -----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2. (생략) 6. <u>제16조제3항의</u>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7. (생략) 7의2. <u>제18조제2항</u>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9. (생략) ② (생략) ③ ~ ⑤ 삭제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u>후단의</u>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u>2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u>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2 제2항</u>----- ----- ----- 7. (현행과 같음) 7의2. <u>제18조제3항</u>----- ----- -----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⑥----- ----- <u>후단</u>----- ----- <u>500만원</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7482